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신한BNPP퇴직연금성장증권모투자신탁[주식]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의 범위 내에서 90%미만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2. 신한BNPP한국대표기업증권모투자신탁[주식]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의 범위 내에서 90%미만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의 범위 내에서 90%미만으로 할 수 있다.</p>